

『정보통신산업동향』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입니다.

정보통신 산업동향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등

목 차

[동향 1]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1
(2014. 5. 28 공포, 법률 제12680호, 2014. 8. 28 시행)	
[동향 2] 「건설산업기본법」개정	11
(2014. 5. 14 공포, 법률 제12580호)	
[동향 3]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발췌)	20
- 미래창조과학부, 3개년('14~'16년) 중기계획 발표	
[동향 4] 2014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계획	26
[동향 5] 2014년 4월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30
[동향 6] 2014년 주택종합계획(발췌)	38

발 간 사

우리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보통신산업동향」은 ICT산업과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최근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이슈를 정리·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ICT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본 동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내용은 우리연구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정보통신공사업 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기본계획」, 「2014년도 공중선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우리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토교통부의 주요정책과 관련법령의 주요개정내용 등의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정책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ICT분야의 제도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 스마트시대를 선도하고 미래의 창조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Think-Tank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2014. 5. 28 공포, 법률 제12680호, 2014. 8. 28 시행)

I. 개정경과

- 당초 정부는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감리수행자격을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와 함께 정보통신용역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또한, 기업경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업계의견을 수용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등록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 하도급계약의 건전성 확보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그러나 법안심의과정에서 전기관련 기술사들의 문제제기로 설계·감리수행자격에 관하여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가 제출¹⁾되었으며,

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6. p9 ~ p10.

- o 2013년 9월 10일 최민희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민법개정내용²⁾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안을 제안함에 따라,
- o 2014년 4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제출안과 최민희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을 토대로 관련내용들을 조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 법률개정안이 5월 2일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o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자격 개선내용은 감사원의 지적³⁾이 있었던 사항으로 입법화될 경우, 정보통신 전문인력이 건축물내 정보통신 공사의 설계·감리를 담당함으로써 첨단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의 반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건축사 등의 정보통신용역업자에 대한 하도급으

2)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3.7. 공포, 2013.7.1. 시행)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관련 민법 개정 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성년후견인 : 질병 ·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 피한정후견인 : 질병 ·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 · 피특정후견인 : 질병 ·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3) 감사원은 2010. 12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에서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등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이 무산된 것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II. 주요개정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원칙 허용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p>제15조(등록기준)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기술능력</p> <p>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p> <p>3.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p> <p>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3. 등록을 신청한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 금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등록신청이후에 신청자가 갖던 등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종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내용의 변동없이 법에서 규정하였다.

2.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연구기관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②(생략) <u><신설></u>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②(현행과 같음) <u>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으며, 그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연구·조사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 개정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적산제등의 공사업의 예산기준을 연구하거나,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이는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우리 연구원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였던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의 연구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명확화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기준 근거 마련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 ----- ----- ----- -----. ----- -----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삼사할 수 있다.

종 전	개 정
	<p>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p> <p>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o 종전 법령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분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그러나 이 규정을 이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종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여 일괄하도급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 개정내용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일괄하도급을 금지함으로써, 원도급자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고 하도급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⁴⁾
- 또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근거가 없어 공사의 실행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⁵⁾
- 저가하도급은 하수급인의 경영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2013년 우리연구원의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5.59%에 해당하는 업체가 원도급자의 요구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적정성 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상자의 80.17%인 공사업체가 하도급적정성심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4. 사용전검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6조(공사의 사용전 검사 등) <u><신 설></u>	<p>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완공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 사용전검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시공상태, 시공자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권자가 관련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 개정내용은 검사권자가 사용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이것은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에는 설계도면,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내용, 현장대리인선임정보 등 사용전검사를 위한 자료를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5.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p>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 · 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5호 · 제7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p> <p>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p>	<p>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p> <p>-----.</p>
	<p>4. -----</p> <p>-.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 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공사업자는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할 수 없어 회생이 어려워지고, 해당업체에 소속된 인력, 자재공급업체, 하도급업체 등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개정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회생절차를 밟는 등 합리적인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 함으로써 원활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III. 시사점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일괄하도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하도급적정성심사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하도급거래질서확립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게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무난하게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정보통신용역업자가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논의과정에서 전기기술사 등의 반대활동으로 개정이 무산된 점이다. 이로인해 융·복합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이 현장에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보통신용역업자의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정보통신 설계·감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14. 5. 14 공포, 법률 제12580호)

I. 개정배경

- 이번 개정법률은 그동안 건설시장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그간에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하여 공종별로 다수의 업체가 진행한 하도급대금을 체불하거나 현장에 임차한 장비의 대여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다수의 업체 및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저가하도급계약을 하거나, 이중계약을 강요하는 사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불공정 하도급계약행위가 발생하는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역시 요구되었다.
- 또한, 반복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불법하도급이나 대금체불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므로 반복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II. 주요개정내용

1. 반복적 등록기준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조문대비표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3년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5년이내에 건설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게 제한이 된다.
 - 또한, 아래의 사유로 건설업등록말소후 1년 6개월이내의 기간동안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건설업등록후 3년이내에 등록기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설업등록후 1년이 지날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않거나 1년이상 휴업한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자격증을 임차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거나 다른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기준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제화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28조(건설공사 <u>수급인의</u> 하자담보책임) <u><신 설></u>	제28조(건설공사 <u>수급인 등</u> 의 하자담보책임) ④ <u>하수급인의</u>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 본다.

-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하자담보책임기간⁶⁾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하도급계약과정에서 정

리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6개월후인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u><신 설></u>	<p>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 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률

○ 종전에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 계약정보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등 당사자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 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 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 :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 : 5년

- 개정내용은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소급인, 하도급공종, 하도급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등 하도급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로인해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 통보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u>발주자</u>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⑤ -----

- 종전에는 공제조합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 개정내용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대상에 하수급인을 포함함으로써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사라질 전망이다.

5. 저가낙찰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 마련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p>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② (생 략) 1. ~ 5. (생 략) <u><신 설></u></p>	<p>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② (생 략) 1. ~ 5. (생 략) <u>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u> <u>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예정가격에</u> <u>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u> <u>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u> <u>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u> <u>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u> <u>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u></p>

- 저가낙찰공사는 적정공사비의 부족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 하도급업체에게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개정내용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저가로 낙찰받은 원도급업체가 당해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로써 원도급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체불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하도급대금등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 조문대비표

종 전	개 정
<u><신 설></u>	<p>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채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종 전	개 정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o 개정내용은 하도급대금을 체불하여 2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o 또한, 체불업체의 시공능력평가시 체불이력을 반영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액에서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III. 시사점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행위의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문화의 정착과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확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의 체불로 인하여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자재업체 등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어 건설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입법화하였다.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례는 공정한 시장문화 정착 및 대·중소기업의 공생문화의 확산이라는 최근의 경향을 감안할 때, 우리 정보통신분야에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이중 공공발주자들의 하도급계약정보 공개 및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지불근거마련,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하도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발췌)

- 미래창조과학부, 3개년('14~ '16년) 중기계획 발표 -

I. 개요

- o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개년('14 ~ '16년) 중기계획으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발표
 -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은
 -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를 준비하고,
 -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
- o 「ICT 기본계획」은 “초연결 창조한국(Hyper-connected Creative Korea)”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학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를 제시
 - 이를 위해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학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함

II. 주요내용

1.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강화

- (소프트웨어 시장확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관련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스타기업을 '16년까지 50개 육성
- (방송 · 콘텐츠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육성) 초고화질 TV(UHD) 활성화 전략 추진,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 (초연결 시대의 대동맥인 유 · 무선 인프라 확충)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5G)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미래주파수 확보
 - *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산: '13년 16.8% → '17년 90%
 -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5G와 사물인터넷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ICT 올림픽으로 개최
- (부품 · 장비산업 지원)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올 3차원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으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무한상상실 등에 3차원 프린터 보급으로 학생과 일반인 스스로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또한, 차세대·부품 디바이스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 장비 수요예보제 시행 등으로 중소 장비 제조 업계 지원

2.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 (범부처 협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본격 추진)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제조업 및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본격화
※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4년 30개 → ‘15년 40개 → ‘16년 50개
- (융합신산업 육성으로 신규시장과 일자리 창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신사업 프로젝트 추진 및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산업전반으로 확산
※ 단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3~4개) 대상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14년)
(예) 자율 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스마트 자동차+사물인터넷+이동통신), 원격종합 건강관리 서비스(웰니스 케어+착용형 스마트 기기+이동통신+빅데이터 등)
- (지역이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정례 협의체 운영,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제고
- (사회 전반으로 융합문화 확산) 산업별·업종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공표하고, 금년 2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기술융합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新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

3.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 마련) 병원간 진료기록 교류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전적·적극적인 재난재해 및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도로굴착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노력
 - ※ 스마트 빅보드: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빅데이터의 합성어로 흘어진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도에 표현·분석하는 첨단 재난상황관리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 특히,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
- 그동안 사후적·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선제적·동적 정책으로 변경. 이를 위해 민간 자율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시행하며, 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
- 신종 금융사기·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정보보호 산업도 본격 육성
-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정보문화 확산)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 조성, EBS 및 온라인 교육 확대와 정보소외 계층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터넷과 방송 접근성 강화로 다함께 누리는 정보사회를 구현
- (공공 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로 창업 활성화를 지원) 교통, 기상, 공간정보 등 데이터 개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 공공기관 데이터(7,392종) 개방비율: (‘13년) 15.2% → (‘16년) 60%(4,436종)

4.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 (소프트웨어와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등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과목 반영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원 운영,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대학(원)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융합·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 IT연구센터 개편
-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를 구축)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창업교두 보로 활용하고, 창업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동남아 및 동 유럽 등에 현지 거점 확대로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벤처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전세계 2천개 이상이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
- (전략분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및 성과 사업화 지원 강화) 사물인터넷, 5G, 스마트 카 등 전략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위상 강화와 통일시대 대비전략 추진) ITU 전권회의(‘14.10.20~11.7, 부산)를 계기로 국제기구 주요직위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인터넷·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통일대비 계획 마련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ICT 통일 대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III . 규제제거 및 기대효과

- (규제제거)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막는 법·제도 개선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활성화의 걸림돌 제거

- 신규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
- 특히,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는 정보보호 등을 제외하고는 정 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의 조정으로 법령간 충돌 요소를 제거하여 규제 없는 산업으로 육성

※ ICT 관련 경제 규제 개선 목표: ‘14년 12%, ‘17년까지 최소 20% 감축

- o (기대효과)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산업은 2016년 2,000억불을 돌파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최강국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 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고, 정보통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나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2014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계획

I. 개요

- o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0일 「2014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계획(안)」을 확정·발표

- ◇ 공중선 정비사업은 전국의 공중선(전주위에 난립된 전력·통신·방송 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도시미관개선을 도모하는 사업
 - * 1단계(‘13 ~ ‘17년, 5년)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의 공중선을 우선 정비하고, 2단계(‘18 ~ ‘22년, 5년)에는 나머지 중·소 도시지역을 정비할 예정
 - * 미래부와 산업부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 ◇ 공중선 정비사업은 공중선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공중선 정리사업”과 공중선을 지하에 묻는 “지중화 사업”으로 구분 추진

- o 2014년도 공중선 정비계획은 20개 도시의 지자체 공무원과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가 ‘13. 10 ~ 12월(3개월)간 지역내 공중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됨

- 금년도에는 20개도시 203개 구역의 공중선 정리사업에 2,234억원을 투자하고, 94개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1,051억원 등 총 3,285억원을 투자하여 공중선을 정비할 예정임
- 금년에는 시범사업지역을 7개 특별·광역시로 확대 추진 예정
 - 시범사업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II. 주요내용

1. 정비물량

- (공중선정리) 금년도는 20개 도시 203개 구역(603개 구간)의 전주 59,032본 및 공중선 2,947km 정비 예정
 - '13년도에 비해 정비구역은 58개(145→203개) 늘어났으나, 전주수 28,498개 (87,530→59,032개) 및 정비거리 592Km(3,538→2,947Km)가 줄어듦*
- * (정비물량 감소사유) 종합계획상의 '13~'17년(5년간)까지 투자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비물량도 감소 ('13년) 3,619억원→ ('4년) 3,097억원→ ('15년) 3,060억원→ ('16년) 2,804억원→ ('17년) 2,770억원
- (지중화사업) 금년도에 94개 구간을 정비('13년의 83개에 비해 11개 구간 증가)

< 2014년도 공중선 정비물량 >

구분	정비구역(구간)			공중선정리 정비물량			케이블 거리 (궁장,m)	
	공중선		지중화	전주 및 통신주		소계		
	구역 (수)	구간 (수)	구간 (수)	전주 (본)	통신주 (본)			
서울	53	149	27	4,228	3,498	7,726	392,082	
부산	21	71	13	4,025	2,094	6,118	306,917	
인천	18	39	11	3,670	1,292	4,962	107,325	
대구	8	31	5	5,878	1,779	7,657	251,818	
대전	12	12	6	2,895	1,428	4,323	107,822	
광주	2	34	1	5,468	2,043	7,511	231,478	
울산	11	103	12	2,347	1,287	3,634	563,661	
창원	6	13	1	1,479	1,109	2,588	147,589	
수원	16	16	4	795	292	1,088	279,182	
성남	4	4	1	689	226	914	28,501	
고양	6	6	3	406	27	433	6,128	
용인	4	4	1	975	171	1,146	31,678	
부천	2	12	—	363	168	532	29,356	
안산	1	9	—	1,964	347	2,311	46,216	
청주	5	13	—	985	617	1,602	70,979	
전주	6	5	5	1,893	608	2,501	15,687	
안양	1	1	2	302	101	403	33,778	
남양주	21	75	1	673	158	831	43,513	
포항	3	53	—	1,048	489	1,537	159,319	
천안	3	33	1	963	252	1,215	93,548	
2014년 합계	203	650	94	40,083	17,734	57,817	2,853,029	
2013년 실적	145	906	83	65,027	22,503	87,530	3,538,277	
증감	58	-223	11	-23,981	-13,469	-28,498	-591,700	

2. 투자금액

- 금년도의 투자금액은 3,285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투자실적 3,555억원에 비해 270억원이 축소된 규모임

< 2014년 공중선 정비사업 투자계획(안), (금액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증감
공중선 정리	한전	78,179	58,584	-19,595
	방송 · 통신사	186,171	164,757	-21,414
	소계	264,350	223,341	-41,009
지중화 사업	한전	63,046	60,516	-2,530
	방송 · 통신사	28,086	44,612	16,526
	소계	91,132	105,128	13,996
총 계		355,482	328,469	-27,013

< 2014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지자체별 예산배분(안), (금액단위 : 백만원) >

지자체	공중선			지중화			투자금액 합계 (A+B)
	한전	통신사	소계(A)	한전	통신사	소계(B)	
서 울	11,547	38,553	50,100	18,434	13,274	33,582	84,673
부 산	4,824	16,660	21,484	12,331	8,522	22,946	44,203
인 천	5,503	14,578	20,081	4,820	718	3,565	22,344
대 구	6,928	15,472	22,400	6,930	1,736	4,462	28,339
대 전	3,229	8,298	11,527	5,420	3,990	9,158	21,240
광 주	3,461	8,420	11,881	460	629	1,129	13,484
울 산	2,117	7,357	9,474	4,926	7,104	11,217	20,841
창 원	3,478	7,547	11,025	300	277	627	11,926
수 원	2,619	4,924	7,543	1,590	953	2,153	8,303
성 남	802	2,839	3,641	280	705	1,005	4,646
고 양	781	3,008	3,789	855	185	585	4,572
용 인	845	4,563	5,408	465	339	806	6,538
부 천	1,755	3,175	4,930	-	428	1,144	5,620
안 산	138	3,945	4,083	-	-	-	4,611
청 주	1,406	4,257	5,663	-	-	-	6,369
전 주	1,673	5,504	7,177	1,920	4,240	8,652	15,639
안 양	510	2,494	3,004	1,595	1,243	3,627	6,561
남양주	1,772	3,368	5,140	10	-	-	4,436
포 항	4,090	4,523	8,613	-	-	-	6,504
천 안	1,106	5,272	6,378	180	269	470	7,620
합 계	58,584	164,757	223,341	60,516	44,612	105,128	328,469

2014년 4월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I. 개요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의 승인(승인번호 제41201호)을 받아 매월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정보통신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에 대한 가격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통계학적 수치”이며,
- 실적공사비 적용시 과거에 수행한 정보통신공사의 실적자료를 차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가변동사항, 자재비 및 인건비등의 변동 사항을 현재 시점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산출하는 자료이다.
-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실적공사비 적용자료로 활용되는 것 외에 정보통신공사산업전반에 관한 시장규모 예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매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지수발표일 (매월 20일 전후)로부터 3일이내에 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 현재 발표되는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와 같이 2010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있다.

II.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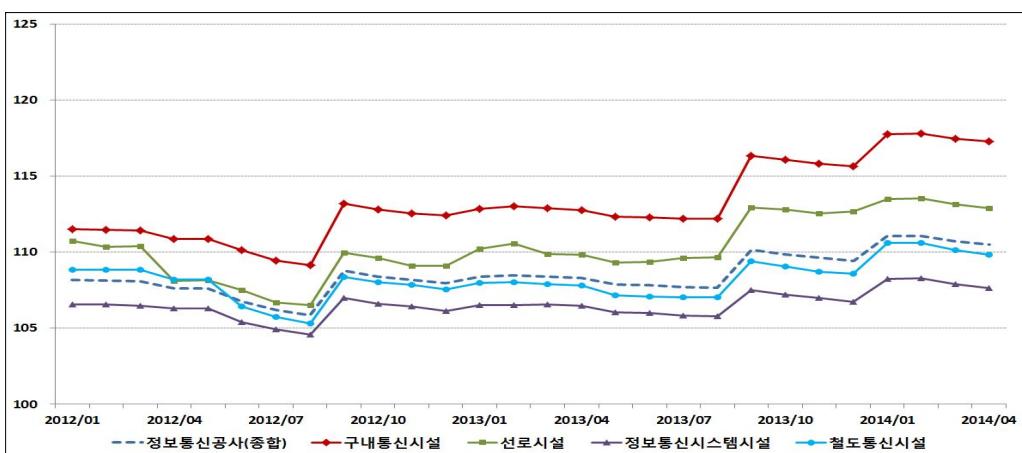
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동향

- 2014년 4월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110.47(2010년=100)로, 전월대비 0.21%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2.00%, 전년 동기대비 2.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100)

구 분	2013년		2014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공사비지수	109.62	109.42	111.05	111.07	110.70	110.47
전 월 비	-0.20%	-0.18%	1.49%	0.02%	-0.33%	-0.21%
전년동월비	1.33%	1.38%	2.45%	2.42%	2.12%	2.00%
전년동기비	0.88%	0.93%	2.45%	2.43%	2.33%	2.25%

주 :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o 동향분석

-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알루미늄1차정련품(6.42%), 비디오도어폰(4.51%), 포틀랜드시멘트(4.12%), 알루미늄선(3.99%), 니켈괴(3.46%), 등의 가격상승과 초산(-7.69%), 금속표면처리용화합물(-5.94%), 동판(-5.55%), 금괴(-5.32%), 태양전지(-3.94%) 등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월 대비 0.21% 하락
- 노무비의 가격변동은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4월은 노임단가의 변동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 등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
-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지수 하락의 요인은 구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설비, 철도통신설비에서 높은 비중(가중치)를 가지는 볼트 및 너트, 아연도금강판, LCD편광필름 품목과 선로설비에서의 광섬유케이블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기본 분류체계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가지는 품목의 가격하락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분석됨

o 전월대비 등락률이 큰 대표품목

- 상승(%) : 알루미늄1차정련품(6.42%), 비디오도어폰(4.51%), 포틀랜드시멘트(4.12%), 알루미늄선(3.99%), 니켈괴(3.46%), 스테인레스냉연강판(3.41%), 알루미늄2차정련품(2.67%), 레미콘(2.19%), 알루미늄판(2.05%), 스테인레스중후판(1.89%)
- 하락(%) : 초산(-7.69%), 금속표면처리용화합물(-5.94%), 동판(-5.55%), 금괴(-5.32%), 태양전지(-3.94%), 전력선(-3.70%), 동판(-3.26%), 열연강대 및 강판(-3.18%), 나동선(-2.80%), 에틸렌(-2.70%)



o 전월대비 기여율이 큰 대표품목

- 상승(%) : 비디오도어폰(8.83), 철강절단품(7.64), 스테인레스냉연강판(5.38), 알루미늄주물(3.98), 알루미늄판(3.50), 니켈괴(2.11), 레미콘(1.52), 무선통신용교환기(1.49), 스테인레스강봉강(1.43), 스테인레스중후판(1.41)
- 하락(%) : 볼트 및 너트(-32.00), 아연도금강판(-21.10), 애폴시인쇄회로기판(-10.52), LCD편광필름(-8.79), 금속표면처리용화합물(-7.27), 전력선(-6.75), LCD용 백라이트유니트(-6.69), 광섬유케이블(-6.36), 동박적층판(-4.21), LED(-4.05)

2. 하위지수 동향

- o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6개의 기본부문 지수, 4개의 중분류 지수, 최상위 지수인 정보통신공사비지수로 분류
※ 선로 및 철도통신의 경우, 기본부문 지수와 중분류 지수가 동일

o 중분류의 전월대비 등락률

- 상승(%) : 해당없음
- 하락(%) : 철도통신시설(-0.29), 선로시설(-0.24), 정보통신시스템시설(-0.23), 구내통신시설(-0.14)

o 기본부문의 전월대비 등락률

- 상승(%) : 해당없음
- 하락(%) : 철도통신설비(-0.29), 정보통신특수설비(-0.28), 선로설비(-0.24),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0.23), 정보제어설비(-0.21), 공동주택설비(-0.03)

3. 정보통신공사비지수 통계표

o 해당월의 정보통신공사비지수

(2010=100)

분류체계	2013/10	2013/11	2013/12	2014/1	2014/2	2014/3	2014/4
정보통신공사	109.84	109.62	109.42	111.05	111.07	110.70	110.47
구내통신시설	116.07	115.83	115.64	117.76	117.81	117.45	117.29
공동주택설비	118.47	118.30	118.13	120.58	120.65	120.38	120.34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114.16	113.85	113.64	115.50	115.54	115.12	114.86
선로시설	112.80	112.53	112.65	113.47	113.53	113.14	112.87
선로설비	112.80	112.53	112.65	113.47	113.53	113.14	112.87
정보통신시스템시설	107.18	106.99	106.74	108.25	108.26	107.89	107.64
정보제어설비	106.49	106.31	106.03	107.43	107.45	107.05	106.83
정보통신특수설비	108.36	108.16	107.96	109.64	109.66	109.33	109.02
철도통신시설	109.03	108.70	108.59	110.61	110.61	110.14	109.82
철도통신설비	109.03	108.70	108.59	110.61	110.61	110.14	109.82

o 해당월의 전월 대비 등락률

(2010=100, %)

분류체계	2013/10	2013/11	2013/12	2014/1	2014/2	2014/3	2014/4
정보통신공사	-0.26	-0.20	-0.18	1.49	0.02	-0.33	-0.21
구내통신시설	-0.22	-0.21	-0.16	1.83	0.04	-0.31	-0.14
공동주택설비	-0.21	-0.14	-0.14	2.07	0.06	-0.22	-0.03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0.23	-0.27	-0.18	1.64	0.03	-0.36	-0.23
선로시설	-0.12	-0.24	0.11	0.73	0.05	-0.34	-0.24
선로설비	-0.12	-0.24	0.11	0.73	0.05	-0.34	-0.24
정보통신시스템시설	-0.29	-0.18	-0.23	1.41	0.01	-0.34	-0.23
정보제어설비	-0.27	-0.17	-0.26	1.32	0.02	-0.37	-0.21
정보통신특수설비	-0.33	-0.18	-0.18	1.56	0.02	-0.30	-0.28
철도통신시설	-0.33	-0.30	-0.10	1.86	0.00	-0.42	-0.29
철도통신설비	-0.33	-0.30	-0.10	1.86	0.00	-0.42	-0.29

○ 해당월의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

(2010=100, %)

분류체계	2013/10	2013/11	2013/12	2014/1	2014/2	2014/3	2014/4
정보통신공사	1.34	1.33	1.38	2.45	2.42	2.12	2.00
구내통신시설	2.91	2.93	2.89	4.36	4.27	4.05	4.01
공동주택설비	3.85	3.98	3.91	5.50	5.35	5.19	5.21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2.14	2.07	2.07	3.41	3.37	3.13	3.02
선로시설	2.90	3.14	3.25	2.98	2.70	2.99	2.77
선로설비	2.90	3.14	3.25	2.98	2.70	2.99	2.77
정보통신시스템시설	0.54	0.52	0.58	1.62	1.64	1.24	1.11
정보제어설비	0.16	0.10	0.16	1.19	1.23	0.79	0.69
정보통신특수설비	1.21	1.22	1.29	2.34	2.33	2.01	1.83
철도통신시설	0.95	0.78	1.00	2.44	2.42	2.10	1.86
철도통신설비	0.95	0.78	1.00	2.44	2.42	2.10	1.86

○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2010=100, %)

분류체계	2013/10	2013/11	2013/12	2014/1	2014/2	2014/3	2014/4
정보통신공사	0.84	0.88	0.93	2.45	2.43	2.33	2.25
구내통신시설	1.99	2.07	2.14	4.36	4.31	4.22	4.17
공동주택설비	2.84	2.94	3.02	5.50	5.43	5.35	5.31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1.30	1.37	1.43	3.41	3.39	3.30	3.23
선로시설	1.48	1.64	1.77	2.98	2.84	2.89	2.86
선로설비	1.48	1.64	1.77	2.98	2.84	2.89	2.86
정보통신시스템시설	0.35	0.37	0.39	1.62	1.63	1.50	1.40
정보제어설비	0.06	0.07	0.07	1.19	1.21	1.07	0.97
정보통신특수설비	0.85	0.89	0.92	2.34	2.34	2.23	2.13
철도통신시설	0.16	0.22	0.28	2.44	2.43	2.32	2.21
철도통신설비	0.16	0.22	0.28	2.44	2.43	2.32	2.21

4. 참고사항

o 공사비지수 활용시 유의사항

- 통계표에 명시된 기본부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해당 공사의 유형이 기본부문에 없는 경우에는 상위지수(중분류 및 대분류)를 적용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민간공사에 적용할 경우 해당 시설공사의 사업비에 차이 발생 가능)
-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가격의 변동추이 측정이 목적이며,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음
-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별도의 연구수행 시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자료에서 제시한 결과 이외의 추가적인 해석을 금지함

o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분류체계 정의

기본부문	해설
공동주택설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시설되는 정보통신공사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설비	공동주택을 제외한 청사 등의 건축물에 시설되는 정보통신공사
선로설비	동·광케이블, 관로 등의 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정보통신특수설비	교환 설비공사 전송 설비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 설비공사 공항·항만통신 설비공사 선박 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정보제어설비	정보제어·보안 설비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철도통신설비	철도와 관련된 시설의 정보통신공사



o 용어정의

- 등락률 : 전월, 전년 동월, 전년 동기 등의 기준값에 대하여 오르거나 떨어진 정도의 비율
- 전월 대비 등락률 : 전월과 비교한 금월의 공사비지수 등락률
-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 : 전년의 같은 월과 비교한 금월의 공사비지수 등락률
-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 금년 1월부터 금월까지의 평균을 전년 동기간의 평균 공사비지수와 비교한 등락률
 - ※ 1월의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 1월의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
 - ※ 12월의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 연평균(1월~12월) 등락률
- 기여도 : 개별 품목의 변동이 공사비지수의 변동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기여율 : 공사비지수의 변동률에 대한 개별품목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췌)

I. 개요

- 국토해양부는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2014.4.4)
- 2013년의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셋값의 경우 월세전환 등 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 이는 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세제·금융·청약제도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
- 국토해양부는 2014년에도 시장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

II. 2014년 주택건설 및 공급 계획

1. 주택수요 추정

- 금년도 주택수요는 수도권 21.2만호, 지방 17.3만호 등 38.5만호 수준

- (가구 요인) 가구 분화 등 꾸준한 가구수의 증가로 18.6만호 수준의 신규주택 수요 예상
- (소득 요인) 경기회복(3% 중후반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13.3만호 수준의 신규주택 수요 예상
- (멸실 요인)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멸실로 인한 대체수요 6.6만호 발생

< '14년 신규주택 수요 추정 >

계	요인별			지역별	
	가구요인	소득요인	멸실요인	수도권	지방
38.5만호	18.6만호	13.3만호	6.6만호	21.2만호	17.3만호

* 실제 경제·정책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주택공급 계획

o '14년 인허가 계획

- (지역별) 수도권 20.0만호, 지방 17.4만호 공급

구 분	'13년 계획(A)	'13년 실적(B)	'14 계획(C)	(단위 : 천호)	
				증감(C/A)	증감(C/B)
전 국	370	440	374	1.1%	△15.0%
수도권	200	193	200	0.0%	3.6%
(서 울)	63	78	69	9.5%	△11.5%
(인 천)	23	19	9	△60.9%	△52.6%
(경 기)	114	96	122	7.0%	27.1%
광역시	52	67	45	△13.5%	△32.8%
도	118	180	129	9.3%	△28.3%

- (유형별) 분양주택 31.1만호, 임대주택 6.3만호지방

< 분양주택 >

구 분	합 계	공 공			민 간
		계	LH	지자체	
전 국	311	5	5	0	306
수 도 권	168	3	3	0	165
지 방	143	2	2	0	141

< 임대주택 >

(단위 : 천호)

구 분	계	공 공		민 간
		LH	지자체	
공공	계	63	35	6
	소 계	41	35	6
	국민·영구·행복주택 장기전세·10년임대 등	36	30	6
민간	장기전세·10년임대 등	5	5	0
	소 계	22		22
	기금지원 공공임대 민간 임대	15		15
		7		7

3. '14년 공공주택 준공계획

○ 공공부문은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 준공

(단위 : 천호)

	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소계	영구	국민	공공*
계	76.9	26.3	50.6	1.1	21.5	28.0
수도권	41.4	16.7	24.7	0.7	13.8	10.2
지 방	35.5	9.6	25.9	0.4	7.7	17.8

-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 주택의 준공물량은 43.8만호 전망 ('13년 39.6만호 대비 10.7% 증가)

< 주택 준공 물량 >

(단위 : 천호)

구 분	'13년 실적			'14년 전망*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국	39.6	17.3	22.2	43.8	21.6	22.2
- 아파트	23.5	10.1	13.4	28.9	14.3	14.5
- 기 타	16.0	7.2	8.9	14.9	7.2	7.7
수도권	17.8	7.9	9.8	17.3	9.0	8.3
- 아파트	9.6	4.3	5.3	9.9	5.3	4.5
- 기 타	8.1	3.7	4.5	7.4	3.6	3.7

※ 금융결제원 입주자 모집공고 자료, 대한주택보증 보증실적, LH 및 지방공사 입주계획, 착공실적 등을 토대로 추계한 입주예정물량임

4. 택지공급계획

- 공공택지는 전국 11.7㎢(수도권 6.3㎢) 공급 예정

< '14년 개발방식별 공공택지 공급계획 >

(단위 : ㎢)

구 분	계	택지개발	공공주택	도시개발	행복도시 등 기타
전 국	11.7	0.3	1.9	5.8	3.7
수도권	6.3	0.1	1.4	4.7	0.2
지 방	5.4	0.2	0.5	1.1	3.5

- 신규택지는 택지개발지구 등을 통해 6.0km² 지정계획
(택지는 지정에서 공급까지 2 ~ 3년 시차 존재)

< 택지 지정실적 및 계획 >

(단위 : km²)

구 분	'13년 실적	'14년 계획	증감(%)
전 국	0.5	6.0	1100%
수도권	0.4	4.1	925%

III . 2014년 중점 추진내용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공공임대주택은 작년실적 8만호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행복주택은 금년중 3천호 착공 추진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재건축등 정비사업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재개발등 정비사업 추진활성화
-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에너지절감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단지를 착공하고, 주택관리공단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제정 추진

< 시도별 주택사업 승인 계획 >

(단위 : 천호)

구 분	합계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소 계	공공주택	민영주택	소 계	국민·영 구·행복	기 타
전 국	374.3	311.3	5.0	306.3	63.0	36.1	26.9
수도권	199.8	167.7	2.7	165.0	32.1	21.7	10.4
- 서울	68.6	59.4	0.4	59.0	9.2	7.1	2.1
- 인천	9.4	7.4	0.0	7.4	2.0	2.0	0.0
- 경기	121.8	100.9	2.3	98.6	20.9	12.6	8.3
지 방	174.5	143.6	2.3	141.3	30.9	14.5	16.5
광역시	45.5	34.4	0.0	34.4	11.2	8.5	2.7
- 부산	9.7	7.0	0.0	7.0	2.8	2.5	0.3
- 대구	10.4	7.2	0.0	7.2	3.2	2.5	0.7
- 광주	9.8	7.6	0.0	7.6	2.2	1.8	0.5
- 대전	6.7	6.1	0.0	6.1	0.7	0.6	0.1
- 울산	8.8	6.5	0.0	6.5	2.3	1.1	1.2
도(道)	129.0	109.2	2.3	106.9	19.8	6.0	13.8
- 세종	14.1	13.1	0.0	13.1	1.0	0.0	1.0
- 강원	10.2	8.7	0.0	8.7	1.5	0.4	1.1
- 충북	11.3	9.0	0.0	9.0	2.3	1.1	1.3
- 충남	21.6	17.6	0.0	17.6	4.0	2.0	2.0
- 전북	12.1	9.4	2.3	7.2	2.7	1.0	1.6
- 전남	10.3	6.7	0.0	6.7	3.6	0.7	2.9
- 경북	18.0	17.3	0.0	17.3	0.7	0.3	0.4
- 경남	28.4	25.8	0.0	25.8	2.7	0.5	2.2
- 제주	2.9	1.6	0.0	1.6	1.3	0.0	1.3

< 시도별 공공주택 준공 계획 >

(단위 : 천호)

구분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소계	국민·영구	기타
전국	61.9	26.3	35.6	22.6	13.0
수도권	38.9	16.7	22.2	14.5	7.6
- 서울	11.7	5.3	6.4	3.4	3.0
- 인천	3.6	2.5	1.1	-	1.1
- 경기	23.6	9.0	14.6	11.1	3.5
지방광역시	7.7	2.7	5.0	3.3	1.7
- 부산	0.6	-	0.6	0.6	-
- 대구	1.5	-	1.5	1.1	0.4
- 광주	2.6	0.7	1.8	0.9	0.9
- 대전	1.2	1.0	0.2	-	0.2
- 울산	1.8	0.9	0.9	0.7	0.1
도(道)	15.4	6.9	8.5	4.8	3.7
- 세종	1.0	1.0	-	-	-
- 강원	2.3	1.0	1.4	1.4	-
- 충북	4.9	2.3	2.6	1.8	0.8
- 충남	0.9	0.9	-	-	-
- 전북	2.5	0.6	1.9	0.7	1.2
- 전남	2.2	0.8	1.4	0.4	1.0
- 경북	-	-	-	-	-
- 경남	1.2	-	1.2	0.6	0.6
- 제주	0.4	0.4	-	-	-

정보통신산업동향

제5권 14-01호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합정기

편집인

발행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12번길 80

TEL (031)231-3400 FAX : (031)269-5210

<http://www.kici.re.kr>
